

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0호(2010.06.03.)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9호(2017.02.02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3호(2017.12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89호(2023.05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56호(2025.05.08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·고시되고, 2011.11.14.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8-76호(2018.09.27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-2호(2022.01.06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-95호(2023.08.24.),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4-142호(2024.12.05.),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5-7호(2025.1.16.), 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19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

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-61번지 일대
- 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55,598.9㎡
- 라. 사업시행자의 명칭 :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최일성)
- 마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122, 의당빌딩 3층(대방동)
- 바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(최초)2021.12.29. (변경) 2026.2.13.
- 사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내용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(변경)

구 분		대지면적(㎡)	동수	층 수	세대수	건축연면적(㎡)
공동주택	소 계	41,022.3651	10	지하4층~지상29층	987	167,146.7759
	분 양	36,647.0269	10	지하4층~지상29층	815	149,422.2219
	임 대	4,375.3382	-	지하4층~지상29층	172	17,724.5540
근린생활시설		1,058.4809	-	지상1,2층	-	2,475.5042

2) 토지이용계획(변경)

총 계 (㎡)	택 지(㎡)				정비기반시설 등(㎡)			
	소 계	공동주택	단독주택	그 밖의 건축시설	소 계	도로	학교	공공시설
55,598.9	42,080.9	41,022.4	-	1,058.5	13,518.0	11,514.0	551.0	1,453.0

3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)

공급 대상	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																	상가 면적 (㎡)
	계	36		44		51			59		84					114	140	
		36A	36B	44A	44B	51A	51B	51C	59A	59B	84A	84B	84C	84T1	84T2	114A	140P	
계	987	56	60	60	24	25	12	39	119	40	334	108	40	3	3	61	3	2,475.5042
조 합 원	522	3	0	5	0	0	0	9	105	30	260	48	2	0	0	60	0	－
보 류 지	8	0	0	0	0	0	0	0	1	3	1	1	1	0	0	1	0	－
일반분양	285	18	25	1	8	11	12	16	9	7	73	59	37	3	3	0	3	－
임 대	172	35	35	54	16	14	0	14	4	0	0	0	0	0	0	0	0	－

※ 관련 법령에 부적합한 분양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, 향후 관리처분계획(분양계획) 변경 될 수 있음.

4)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(변경)

구분 (㎡)	신 설(㎡)			용도폐지(㎡)	
	도로	학교	공공시설	도로	경찰서
규모	11,514	551	1,453	7,202.9	361

5) 기존 건축물의 철거 (예정)시기 : 2024.04. ~ 2026. 12.

- '26. 2. 현재 공동주택 부지 철거 완료, 기반시설 부지 일부(노량진5구역 경계) 철거 미완료

※ 상기 철거 예정 시기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음.